

의안 번호	2356	【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】			
		검 토 보 고 서			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4. 11. 11.(월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11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4.(수)

2. 제안이유

-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,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운용방침 : 기금운영실태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
-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입	지출	조성액		
327,655	91,376	77,460	13,916	341,571	

- 수입계획: **91,376천원**
 - 이자수입 6,376천원, 시 보조금 15,000천원, 과징금 수입 70,000천원
- 지출계획: **77,460천원**
 - 식품안전관리 지원사업: 19,460천원
 -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 제작: 2,000천원
 - 동네제과점 종이봉투 제작 배부: 4,000천원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: 560천원
 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: 1,500천원

-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: 8,400천원
- 미식대향연축제 지원: 3,000천원
- **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: 30,000천원**
 - 잔반없는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: 30,000천원
- **식품진흥기금 시 귀속분: 28,000천원**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

제6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4.10.>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2.27><개정 2017.4.10.>

40 (제269회-복지건설위제5차부록)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